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2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8.

발의자 : 서천호 · 박덕흠 · 서명옥
이만희 · 최보윤 · 정점식
서지영 · 진종오 · 조은희
박충권 · 김용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,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,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,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, 농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·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, 농·어업 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69조의2제1항, 제71조제1항, 제87조의2, 제99조의4제1항, 제105조제1항, 제106조제2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</p>	<p>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.</p>
<p>1. ~ 6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9호는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.</p>	<p>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<u>2030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22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</p>	<p>1. ~ 2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